의 안 번 호	제 20 호
의결연월일	

사 천 시 주 민 투 표 조 례(안)

제 출 자	사 천 시 장
제출연월일	2004. 6. 18.

사 천 시 주 민 투 표 조 례(안)

의안 번호 20

제출일자 : 2004. 6. 18

제출자:사천시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04.1.29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 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의 주민투표 자격기준을 정함 (안 제3조)
 -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
- 나. 주민투표의 대상 정함(안 제4조)
 - 읍·면·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, 폐치분합,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
 -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·리의 구역변경과 폐치·분합
 -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
 -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 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
 - 기타 주민의 복리・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

- 다.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를 정함 (안 제5조)
 -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
- 라. 서명요청기간을 정함 (안 제7조)
 -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90일 이내
- 마.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·운영 규정(안 제12조)
 - 의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함
 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
 -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소집
- 바.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 결정 통지 기간을 정함(안 제13조)
 - 열람기간 또는 이의신청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
- 사. 투표운동의 제한 시간을 정함(안 14조)
 - 호별방문 :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
 - 옥외집회 :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

4. 주요토의과제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따로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04.5.24 ~ 6.13)결과 접수된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사천시주민투표조례(안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시의 책무) ①사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주민이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사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 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3조(외국인의 주민투표권)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, 출입국관리 관 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 민투표권이 있다.
 - 제4조(주민투표의 대상)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읍・면・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, 폐치분합,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·리의 구역변경과 폐 치·분합
 - 3.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- 4.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
- 5. 기타 주민의 복리・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
- 제5조(투표청구 주민수)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한다.
- 제6조(서명요청방식)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.
 -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,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 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 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 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,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.
- 제7조(서명요청기간)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 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.

- 제8조(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)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 - ②청구인서명부는 읍·면·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9조(청구인서명부의 제출)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, 청구의 대상 및 취지,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
- 제10조(청구인서명부의 열람)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·면·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별도의 사본을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있다.
 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.
 -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서명보정기간)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.

- 제12조(주민투표청구심의회)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
 - 2.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·결정
 - 3.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·결정
 - 4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 -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한다.
 -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 -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- 1.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
 - 2.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 - 3. 변호사, 대학교수, 공인회계사,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- 4.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
 -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 ⑥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.
- ⑦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통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⑧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⑨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⑩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①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 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 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①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
- 제13조(처리기간)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-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 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 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.
-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4조(투표운동의 제한)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 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(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·토론회를 말한다)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. 다만, 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.
- 제15조(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)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.
 -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.

-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.
-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
-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.
-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.
- 제16조(공표방법 등) 법 제8조제2항, 법 제9조제4항, 법 제10조 제2항, 법 제12조제3항,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·공보·게시판·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.

제17조(위임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【 별지 제1호서식 】

청	 구 인 대	대 표 자	- 증 등	병 서	교부	신청 /	Ч	
청구인	성명			주민등	록번호			
대표자	주소				(전:	화번호 :)
청구의 대상 및 취지								
청구 이유								
주민투표법 교부를 신청		≤제1항의	규정여	에 의하	- 여 청구	구인대표지) 증명	서의
		청구역	인대표		^년 사 천	월 ((서명 ! 시 장		,
※ 참고 : 청 ⁻ 요~		및 취지, 배하고 별			기재린	날이 부족	한 경	우에는

【 별지 제2호서식 】

	청 구 인	대	표 자	증	명 서		
성명			주민등록	번호			
주소		·		(>	전화번호	:)
주민투표 청구요지							
서명요청기간	년 ※제외기간 : 제외지역 :		일부터 4월			일까 <i>지</i> 현 월	

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> 년 ^{월 일} 사 천 시 장 (인)

참고 :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

【 별지 제3호서식 】

		서명요청	성권	위임신	고서			
주민투표 청구요지								
청구인대표자	성명			주민등록	·번호			
경기한대표사	주소				(전화	번호	:)
	성명		(서명	또는 날인)	주민등	록번	호	
	주소				(전화	번호	:)
수임자	기간	년	월	일부터		년	월	일까지
	성명		(서명	또는 날인)	주민등	록번	호	
	주소				(전화	번호	:)
	기간	년	월	일부터		년	월	일까지

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>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(서명 또는 날인)

사천시장 귀하

※ 참고 :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

※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, 별지로 작성

【 별지 제4호서식 】

		서명요청	권 ·	위임선	<u>l</u> 고증			
주민투표 청구요지								
청구인대표자	성명			주민등	록번호			
경기한대표사	주소				(전화	번호 :)
	성명	(서기	경 또는	는 날인)	주민등록	루번호		
	주소			·	(전화	번호 :)
♪ ól ɔl	기간	년	월	일부터	}	년	월	일까지
수임자	성명	(서	명 또	는 날인)	주민등록	루번호		
	주소				(전화	번호 :)
	기간	년	월	일부터]	년	월	일까지

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,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 사 천 시 장 (인)

※ 참고 :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

※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, 별지로 작성

【별지 제5호서식】

(청구인서명부의 표지)

() 주민투표의 청구

청 구 인 서 명 부

서 명 기 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서명주민수: 명

사천시 ○○읍・면・동(○책중 ○권)

※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○○읍·면·동

청구인대표자(서명 또는 날인)수 임 자(서명 또는 날인)

※ 작성요령

- ()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,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, 수임지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.
-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,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.

청구인서명부

번호	성	명	주민등 번	등록호	주	소	서 또 날	명 儿 인	서명 일자	비고

※ 작성요령

- 1.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.
- 2.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.
- 3.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,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.
- 4.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 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.
- 5.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,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, 비고란에 그 삭제 일자를 기재한다.

【 별지 제6호서식 】

	주 민 투 표 청 구 서							
청구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				
대표자	주소	(전화번호 :)						
청구의 대상 및 취지								
청구 이유								
주민투표법 청구합니다.	발 제92	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년 월 일						
		청구인대표자 (서명 또는 날인) 사 천 시 장 귀 하						
※ 첨부서류 :								
		및 취지,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하고 별지로 작성						

【 별지 제7호서식 】

이 의 신 청 서								
신 청 인 -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		
건 경 긴	주소		(전호	화번호 :)				
대 상								
신 청 취 지								
신 청 사 유								
주민투표투 신청합니다.	법 제1	2조제4항의 급	구정에 의하여	위와 같이 이의를				
		년	월 일					
		신 청 인	(X) ¹	명 또는 날인)				
			사 천	! 시 장 귀 하				
※ 첨부서류 :	증빙자	·료						
참고 : 대상	란에는	주민투표청구	취지의 주요내용	을 요약하여 기재				

관계법령발췌

□ 주민투표법

제7조 (주민투표의 대상)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.

- 1.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
- 2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
- 3. 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회계·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
- 4. 행정기구의 설치·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·정원 등 신분과 보 수에 관한 사항
- 5.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. 다만,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6. 동일한 사항(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주민 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

제8조 (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)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(廢置)·분합(分合) 또는 구역변경,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,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, 제16조, 제24조제1항·제5항·제6항,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9조 (주민투표의 실시요건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주민투표청구권자"라 한다)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 시를 청구할 수 있다.
- 1.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(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)

- 2.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
-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.
-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⑤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10조 (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) ①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(이하 "청구인대표자"라 한다)를 선정하여야 하며,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.
-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.
- 제12조 (청구인서명부의 심사·확인 등)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, 자치구·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.
- 1.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
- 2.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
- 3.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
- 4.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
- 5.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
- 6. 강요 ·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
- 7.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

-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, 청구인서명부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.
-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1. 유효한 서명의 총수(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)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
- 2.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
- 3.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
- ⑨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, 서명요청, 청구인서 명부의 작성·제출방법, 서명에 대한 심사·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 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3조 (주민투표의 발의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
 - 2.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
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부터 7일 이내(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)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.
-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.

제22조 (투표운동의 제한)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.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
- 2.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
- 3.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
- 4.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
-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第4條 (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)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・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 되,市・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・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(이하 "地方議會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주민투표법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9.8.31, 2004.1.29>

- ③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·面·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, 이를 變 更하거나 廢置·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 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다만, 區域變更은 特別市長·廣域市長·道知事(이하 " 市·道知事"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
- ④ 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·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다
- ⑤洞・里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・里를 2개 이상의 洞・里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洞・里를 하나의 洞・里로 운영하는등 行政運營上 洞・里(이하 "行政洞・里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- ⑥第5項의 行政洞·里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.